

# 인천지방법원

## 제 16 민사부

### 판결

사건 2015가합51285 손해배상(의)

원고 1. 모○○

2.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피고 황○○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현, 강성련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6.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228,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이 사건 2015.

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망 모◇◇(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망인이 입원하였던 ○○○신경정신과(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 나. 망인의 피고병원에의 입원

- 1) 망인은 2007년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왔는데, 원고들은 2013. 12.경 피고병원에 망인의 입원 · 치료를 의뢰하였다.
- 2) 망인은 2013. 12. 13.부터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망인의 자 · 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CCTV로 24시간 촬영되는 병실에서 생활하였다.

#### 다. 망인의 사망 경위

- 1) 피고병원은 2014. 1. 13. 15:00경부터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기공태권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 2) 망인은 같은 병실의 동료환자와 함께 휴식을 취하겠다면서 위 교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 병실로 들어 왔다. 망인은 피고병원이 전날 19:00경 간식으로 지급한 빵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4. 1. 13. 15:16경 동료 환자와 함께 위 빵을 나누어 먹기 시작하였다.
- 3) 망인은 2014. 1. 13. 15:19경 먹던 빵이 목에 걸린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 동료 환자가 망인의 등을 두들겨 주다가 나중에는 망인에 물을 가져다 주었는데, 망인은

2014. 1. 13. 15:20경 침대 위에 앉은 채 상반신을 이불 위에 엎드린 상태가 되었다.

4) 피고병원의 간호사는 2014. 1. 13. 17:00경 망인의 병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 있던 망인을 흔들어 깨워 보았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라.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4. 1. 15. 망인을 부검하였는데, 그 부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사인 : 이물 유입으로 인한 기도폐쇄성 질식사로 판단됨.

##### 참고사항

1. 사건개요상 “인천 사랑 병원 응급 후송후, 기도 삽관 처치 과정에서는 뺑조각이 발견된 사실이 없다.”는 기록이 있으나, 망인의 인후부에는 타원형의 부드러운 고형물질(뺑 추정)이 관찰되었음.
2. 혈액에서 여러 가지 치료약물이 검출되며, 치료허용치 상한선을 넘는 일부 약물이 관찰되기는 하나, 치사량에는 미치지는 못하는바, 중독사의 가능성을 배제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약물의 영향에 의해 연하곤란이나 기도 내에 음식물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부검소견으로 논할 사항은 아니며 첨부하는 부검 및 약독물 감정서를 근거로 관련학회(신경정신과학회)에 자문을 구하기 바람.

2) 한편, 위 부검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혈액에서 검출된 약성분은 벤즈트로핀 0.10mg/L, 클로르프로마진 0.31mg/L, 클로미프라민 0.81mg/L, 올란자핀 0.24mg/L이다 (이하 위 각 약성분과 관련 정신과 약제를 '이 사건 정신과 약제'라 한다).

#### 마. 관련 의학지식

1) 벤즈트로핀은 뇌염이나 동맥경화성 파킨슨증 등에 사용되는 항파킨슨질환약이며, 치료농도는 0.004 ~ 0.13mg/L이고, 독성농도는 0.05 ~ 0.1mg/L이며, 치사농도는 0.18 ~ 1.1 mg/L로 보고되어 있다. 벤즈트로핀의 부작용으로 항콜린성 중독증상이 나

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상적으로 섬망과 혼수, 간질, 초조, 환각 등을 보일 수 있다.

2) 클로르프로마진은 정신분열증, 정신병, 정신질환 등에 사용되는 폐노치아진계 항정신병약이며, 치료농도는 0.03 ~ 0.3mg/L이고, 독성농도는 0.5 ~ 2mg/L이며, 치사농도는 2mg/L로 보고되어 있다. 클로르프로마진의 부작용으로 신경근이완증후군, 간질, 진정, 중추성 항콜린성 작용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3) 클로미프라민은 진정이 요구되는 우울증상, 강박관념, 공포상태, 수면발작과 관련된 급발작 등에 사용되는 항우울제로, 치료농도는 0.2~ 0.4mg/L이고, 독성농도는 0.6 ~ 1.6mg/L이며, 치사농도는 1.7 ~ 3.3mg/L로 보고되어 있다. 클로미프라민의 부작용으로 항콜린성 효과, 진정, 기립성 저혈압과 간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4) 올란자핀은 착란, 환각 및 정서적/사회적 위축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분열증 및 기타 정신질환의 급성치료와 유지에 사용되는 항정신용제이고, 치료농도는 0.009 ~ 0.1mg/L이고, 독성농도는 0.05 ~ 1mg/L이며, 치사농도는 2.4<sup>1)</sup> ~ 5.2mg/L로 보고되어 있다. 올란자핀의 부작용으로 진정, 입마름, 식욕증가, 추체외로증상 등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5) 벤즈트로핀, 클로르프로마진, 클로미프라민, 올란자핀은 입 마름 증상이 생길 수 있고, 클로르프로마진, 올란자핀의 경우 고용량에서는 삼킴곤란이 나타날 수 있다.

6) 보통 음식을 삼키거나 물을 마실 때 정상적으로는 아무런 감각이나 저항 없이 입에서부터 위장까지 쉽게 통과하는데, 음식이 지나가는 감각이 느껴지거나 음식이 식도 내에서 내려가다가 지체되거나 중간에 걸려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을 연하곤

---

1) 부검감정서(갑 제11호증)에는 치사농도가 0.24mg/L로 기재되어 있으나, 독성농도와 비교하여 볼 때 2.4mg/L의 오기로 보인다.

란이라고 한다. 이러한 연하곤란은 고령, 전반적인 신체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 협회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주장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병원의 아래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①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이 사건 정신과 약제를 적정농도 이상으로 과다투여하였다.
- ② 피고병원은 망인이 사망 전날 간식으로 지급된 빵을 그 다음날 몰래 먹는 과정에서 어떠한 통제나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기공태권도 교육시간에 자신의 병실에 들어가 빵을 먹는 동안 어떠한 관리 · 관찰도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손해배상의 범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일인 2014. 1. 13.부터 가동연한인 2030. 4. 18. 까지 합계 175,914,099원의 장래 소득을 상실하고, 장례비 500만 원을 지출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망인의 사망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50%이다. 또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4,000만 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5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228,524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상속액 45,228,524원{= 180,914,099원(= 175,914,099원 + 500만 원) × 피고의 과실비율 50% × 상속비율 1/2} + 망인의 위자료에 대한 상속액 2,000만 원(= 4,000만 원 × 상속비

율 1/2) + 원고들 각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 가. 이 사건 정신과 약제 과다투여로 인한 망인의 사망 여부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혈액 속에 벤즈트로핀, 클로르프로마진, 클로미프라민, 올란자핀이 검출된 사실, 그 중 벤즈트로핀은 치료농도 범위에 있으나, 독성농도에도 포함되는 0.10mg/L이, 클로르프로마진은 치료농도를 초과하나 독성농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0.31mg/L이, 클로미프라민은 치료농도를 초과하나 독성농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0.81mg/L이, 올린자핀은 치료농도를 초과한 농도인 0.24mg/L이 각 검출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2014. 10. 17.자, 2014. 11. 3.자, 2015. 7. 9.자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정신과 약제를 과다투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연하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바람에 망인이 질식사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혈액에서 치료허용치 상한선을 넘는 일부 약물이 관찰되기는 하나 치사량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에서 중독사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② 이 사건 정신과 약제가 과다투여하게 된 경우 부작용으로 삼킴곤란이나 연하곤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연하곤란의 경우는 약물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고령,

전반적인 신체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대한의사협회는 망인의 연하곤란 이유를 추정하거나 기여도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에 대한 2014. 10. 17.자 감정촉탁결과).

③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정상인이 빵을 먹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이물질이 기도를 막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목마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음식의 상태나 종류 혹은 특성에 따라 그리고 먹는 자세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에 대한 2015. 7. 9.자 감정촉탁결과).

④ 향정신병약물을 처음 투약하는 초기 직후에 기도 평활근의 수축현상이 있다는 외국 논문(네덜란드)이 발견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상황은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향정신병약으로 추체외로증상(근긴장이상, 떨림, 강직)은 위장관과 같은 평활근보다 주로 골격근에서 발생한다(대한의사협회에 대한 2015. 7. 9.자 감정촉탁결과). 그런데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외표검사 및 내경검사에서 특기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병원의 관리 · 관찰 소홀로 인한 망인의 사망 여부

망인이 사망 전날 간식으로 지급된 빵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병실에서 위 빵을 먹은 사실, 피고병원의 간호인이 망인이 쓰러진지 약 2시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망인의 이상 상태를 인식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관리 ·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 이유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와 같은 사정들 때문이다.

① 망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을 겪고 있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정신과 약제를 복용한 상태에서도 인지기능이 현저히 훼손되어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특히 망인이 평소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병원에게 망인이 사망 전날 간식으로 지급된 빵을 먹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망인에 대한 관리·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더라도, 망인이 빵을 먹다가 빵조각이 기도를 폐쇄하여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병원의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망인은 자·타해 위험이 있어서 피고병원에 입원의뢰된 것이고, 망인 병실에 설치된 CCTV 역시 망인의 자·타해 위험을 방지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런데 망인이 빵을 먹을 당시 망인에게 자·타해의 위험성이 증가되어 있다거나, 또는 망인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그 당시 피고병원에 대하여 CCTV상으로 망인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였어야 하는 등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망인은 빵조각이 기도 인후부에 막힌 이후 침대 위에서 엊드린 채로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CCTV상으로 망인의 이상상태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병원이 CCTV상으로 망인의 이상 상태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당시 망인에 대한 관리·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다.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박강민